

울산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0나16341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우

담당변호사 윤희상

피고, 피항소인 C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호성

변 론 종 결 2021. 11. 30.

판 결 선 고 2022. 2. 15.

제1 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9가단118615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7,000,000원, 원고 B에게 37,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제1심 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원고 A이 피고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E이 위 조합가입계약에서 지정된 동호수인 F호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이 피고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G이 위 조합가입계약에서 지정된 동호수인 H호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E, G은 위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 조합으로부터 안심보장증서를 받았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2017년 6월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피고 조합에 대한 납입금 전액을 돌려주고 위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들은 조합원이었던 E, G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피고 조합은 2017. 9. 26. 설립인가를 득하였을 뿐 2017년 6월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위 안심보장증서에 따라 피고 조합에게 원고들이 납입한 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E, G이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이전에 원고들의 각 가입계약에 지정된 동호수로 피고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피고 조합이 E, G에게 위 원고 주장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E, G의 조합가입계약 및 안심보장증서상의 피고 조합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가입계약서에 첨부된

권리의무 승계(명의변경) 확인서의 양도인, 양수인 란에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영, 판사 장성신, 판사 박관형